

일본 ‘금융서비스 중개업’ 신설, 핀테크 활성화의 토대 마련

- ◎ 최근, 금융상품 판매 규제는 업종별이 아닌 행위/기능별로 전환되는 추세
- ◎ 일본은 올해 6월, 은행/보험/증권업계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업종별 등록 없이도 원스톱으로 제공 가능한 “금융서비스 중개업”을 신설하여 중개업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마련하였으며,
- ◎ 우리나라도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유형을 직접판매/대리·중개/자문업자로 재분류하고 판매 행위별로를 업무범위 및 판매원칙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3월에 제정됨
- ◎ 이같은 규제 개편은 금융상품 판매플랫폼 확대 및 핀테크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는 반면, 기존 금융기관들 사이에서는 ‘고객 접점 상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판로 확대의 장점을 극대화할지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개요) 일본에서는 지난 6월 금융상품 판매법¹⁾을 개정하여 ‘금융상품 제공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금융서비스 중개업’을 신설**

- 본 개정안은 금융심의회 「결제법제 및 금융서비스 중개법에 관한 워킹그룹」의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포일(20.6.12.)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정부가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
- 업권별 등록 없이 은행·보험·증권업계의 다양한 금융상품·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중개업”을 신설함에 따라, 핀테크 회사의 금융서비스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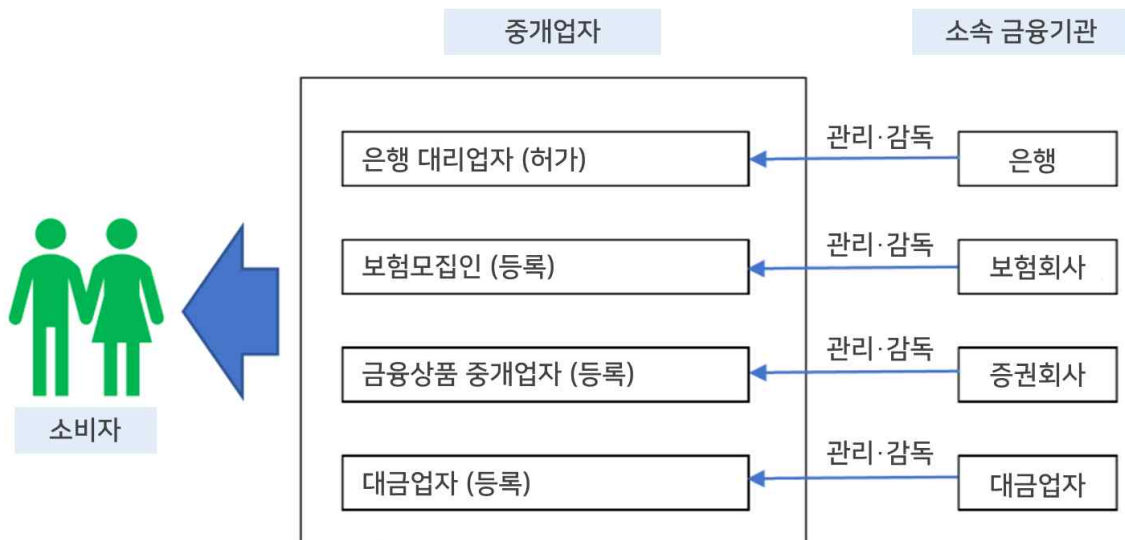
■ (개정 배경) 핀테크 회사가 다양한 업종의 금융상품을 중개할 경우 각 업권마다 허가 및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성 제기

- IT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온라인 금융서비스가 일상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파악한 개인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출/투자상품 등 각종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

1) 정식 명칭은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향상 및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한편, 복수의 업종에 걸쳐 다수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중개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업권마다 각각 허가/등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각 업법이 제각기 적용되므로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 신문·TV광고, 전단지 배부 등의 광고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모집(권유) 행위는 금융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각종 업법에 근거한 등록을 해야 함²⁾
 - * 예) 보험비교사이트에서 특정 상품을 부각시키거나(No.1 상품, 추천상품 등) 보험사 사이트로 유도하여 계약 체결시키는 방식이 단순한 고객 소개 행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모집행위로 간주되어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이 됨
 - 은행법의 은행대리업자, 금융상품거래법의 금융상품중개업자, 보험업법의 보험모집인/보험중개인으로서의 등록이 각각 필요하며, 각 상품마다 해당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각각의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그림2 참조]
 - 은행/보험/증권업의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중개업자는 총 5개에 불과^(19.12 기준)

[그림1] 금융상품 중개시 필요한 등록/허가 (현행)



*출처: 닛세이키초연구소(2020.6.24.) 『새로운 금융서비스 중개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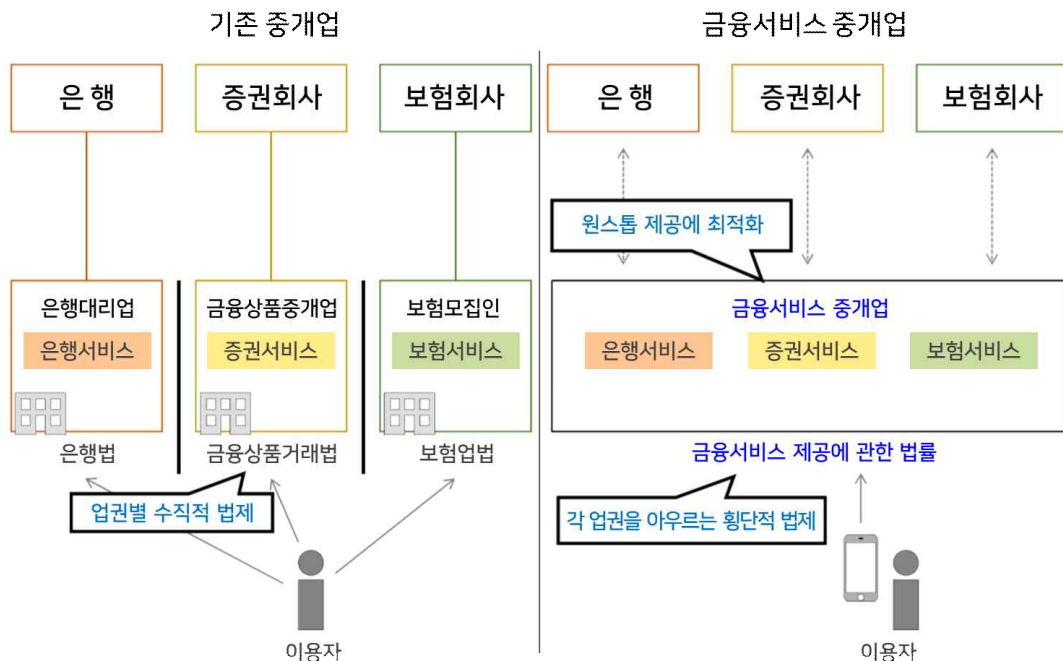
2) 은행대리업 허가(은행법 2조 14항, 52조의 36), 보험모집인/중개인 등록(보험업법 2조 26항 및 36항, 276조), 금융상품중개업자 등록(금융상품거래법 2조 12항, 66조), 대금업 등록(대금업법 2조 1항, 3조 1항)

- 이러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업권별 등록 없이 복수 업종 및 다수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상품/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중개업”을 신설**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20.3.제정, ’21.3.시행)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면 은행/증권/보험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할 수 있음

(12조 1항)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림2] 금융서비스 중개업 구상도



*출처: 금융청(2020.3.), 『금융서비스 이용자 편의 향상 및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설명자료』

- **(금융상품 중개업)** 금융상품 중개업이란 예금, 보험, 유가증권, 대출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매개업무를 업으로 수행하는 것 [표1 참조]
- **(취지)** 본 개정안은 전자결제 대행업자 등 핀테크 회사가 이용자의 저축/투자 니즈를 파악,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

- 현행법에서는 핀테크 회사가 각종 금융서비스를 중개(판매, 소개 등)할 경우, 각 업권마다 등록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각각 업법이 적용, 소속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고 문제 발생시 소속금융기관이 책임을 졌음
 -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부 앱 서비스가 고객의 여유자금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 상품을 추천하거나, 고객 프로필을 바탕으로 특정 펀드에 투자할 것을 추천 하면서 판매사이트에 유도하는 방식으로 모집/권유가 가능해짐
- (종류) 금융상품 중개업에는 ①예금 매개업무, ②보험 매개업무, ③유가증권 중개업무, ④대부 매개업무 가 있음 [표1]

[표1] 금융서비스 중개업의 종류

금융상품 중개업 종류	정의
예금 매개업무	은행대리업자 이외의 자가 ①예금 등 수탁에 관한 계약, ②자금 대출 또는 어음 할인에 관한 계약, ③외환거래에 관한 계약 등의 체결의 매개를 업으로서 수행하는 업무
보험 매개업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중개인 이외의 자가 보험회사와 고객 간의 보험계약의 체결의 매개를 업으로서 수행하는 업무
유가증권 중개업무	금융상품거래업자 또는 금융상품중개업자 이외의 자가 1종 금융상품거래업자 등과 고객 간의 유가증권의 매매의 중개를 업으로 수행하는 업무
대부 매개업무	대금업자 이외의 자가 대금업자와 고객 간의 자금 대출 또는 어음 할인에 관한 계약의 체결의 매개를 업으로 수행하는 업무

*출처 : 닛세이키초연구소(2020.6.24.), 『새로운 금융서비스 중개법제』

- (중개상품) 중개업자는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중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개 가능한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통해 정할 예정
- 예를 들어, 올해부터 판매자격시험을 별도로 신설한 외화형 보험 등은 환율 리스크 등 전문적 설명이 필요하므로 판매 가능상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표2] 금융서비스 중개업이 취급 가능한 상품/서비스(안)

	은행	증권	보험
취급 가능	보통/정기예금,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송금 등	국채, 상장주, 투자신탁 등	종신/의료/장기요양보험 상해, 여행, 골프보험
취급 불가	추가연계예금, 통화옵션형 예금, 외화형 예금 등	비상장 주식/채권, 파생상품 등	변액보험/연금 외화형 보험/연금

*출처 : 금융심의회(2019.12.20.), 『자금결제 및 금융서비스 중개법제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

- **(책임소재)** 위탁업무가 아닌 독립적 중개업무를 수행하므로 금융회사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중개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도 중개업자에게 있음
 -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아 해당 보험회사를 위해 모집을 하는 모집인/대리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 발생 시 보험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³⁾,
 - 보험회사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중개업자는 보험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며, 중개업자의 부적정 판매로 고객이 피해를 입어도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관련 규제)** 금융서비스 중개업자는 각종 업법 규제로부터 제외되어 있으므로 보험 매개업무의 경우도 보험업법의 각종 규제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필요한 규제는 개정법에서 보험업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표3]
 - 재산규제: 문제 발생 시 소속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므로 별도의 재산규제가 불필요한 보험대리점이나 모집인과는 달리,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자금능력 확보를 위해 보증금* 공탁을 통한 재산규제가 필요
 - *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면서도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한 수준
 - 업무규제: 신의성실의무, 정보공개의무, 중개수수료 공개의무(고객 요구시) 외, 고객 재산 위탁업무 금지(27조)를 통해 중개업자 도산 시에도 고객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함

3) 보험업법 283조 1항

- **(영향 및 과제)** 금융업계는 본 개정안으로 인해 ①판로 확대 라는 긍정적 영향과 ②고객 접점 상실 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본 개정안으로 복합 금융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핀테크 회사들의 금융상품 판매플랫폼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같은 판매플랫폼 증가가 기존 금융회사들에게는 판로 확대로 이어지는 한편, 고객 접점이 중개업자에 집중되어 고객 접점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 금융기관으로서는 판로 확대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고객 접점 상실 이라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해나가야 할지가 해결과제로 지적됨

[표3] 보험 매개업무에 관한 각종 규제 (개정법)

규제 종류	규제 내용	관련 법령
법적 성질	보험매개업무는 보험법상의 보험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개정법 17조
	금융서비스 중개업을 등록한 자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전자결제 대행업 등록 없이도 전자결제 대행업을 수행 가능	개정법 18조
재산규제	금융서비스 중개업자는 영업소의 가까운 공탁소에 공탁을 해야 하며 공탁금액은 중개업자의 상황 및 고객 보호를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함	개정법 22조 1~2항
업무규제	신의성실의무	개정법 24조
	정보공개의무	개정법 25조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수립	개정법 26조
	고객 재산 예탁(금전 수령 등) 금지	개정법 27조
	민원처리조치 수립	개정법 28조
행위규제	모집시 정보제공의무, 고객익향 파악의무 허위사실 고지, 중요사실 불고지 등 부적정 모집행위 금지 자기계약 금지 등	개정법 30조 (보험업법 293~298조, 200조, 309조 준용) 개정법 31조 (금융상품거래법 38조 1~6항 준용)

*출처: 금융청(2020.3.), 『금융서비스 이용자 편의 향상 및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참고자료>

금융심의회(2019.12.20.), 『자금결제 및 금융서비스 중개법제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

금융청(2020.03.), 『금융서비스 이용자 편의 향상 및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설명자료』

넷세이기초연구소(2020.6.24.), 『새로운 금융서비스 중개법제 ‘핀테크법’ 제정』

다이와종합연구소(2020.7.2.), 『금융서비스 중개, 자금이동 개정법 통과』

PWC Legal Japan News(2020.6.), 『2020년 금융상품판매법 개정 개요』